

#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개정사항

7편 1장



2025. 9.  
기관규칙개발팀

## - 주요 개정 내용 -

(1) 2026.01.01.일자 시행사항 (선박 건조계약일, 회보발행)

◎ MSC.1/Circ.1683 : 가스프리 관련 배치 UI의 반영으로 인한 적용지침 신설 및 관련 인용규정 신설 - 8편, 7편 1장, 7편 6장 개정

제 7 편 전용선박

제 1 장 유조선

제 10 절 유조선의 관장치 및 벤트장치

〈2026. 1. 1 시행  
(선박 건조계약일,  
회보발행)〉  
\* MSC.1/Circ.16  
83 반영

1001. 일반사항 [규칙 참조]

1. 화물유탱크의 하부에 화물유탱크로 사용하지 않는 이중저를 가지는 유조선에 대하여는 규칙 10절의 규정에 따르는 이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 (1) 이중저에 설치하는 공기관 및 측심관은 화물유탱크를 관통시킬 수 있다. 다만, 화물유탱크내의 관이음은 모두 용접이음으로 하고 표 7.1.8에 표시하는 두께 이상의 강관을 사용한다. 또한, 관의 팽창 수축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만곡관을 배치하는 등의 고려를 하여야 한다.
  - (2) 화물유탱크의 내저판 등 항상 액압이 걸리는 장소에는 밸브조작용의 스피들을 관통시켜서는 안된다.
  - (3) 선수부의 탱크 또는 보이드 구역의 액체이송관 및 빌지흡입관은 다음에 의한다.
    - (가) 화물유탱크의 전부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탱크 또는 보이드 구역의 관장치는 후부의 펌프실에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연료유 이송관은 기관실에 설치된 펌프에 유도할 수 있다.
    - (나) 화물유탱크에 인접하지 아니하는 선수부의 탱크 또는 보이드 구역의 관장치는 후부의 펌프실 또는 기관실에 설치된 펌프에 유도할 수 있다. 이 탱크가 평형수탱크일 경우의 평형수관장치는 화물유탱크에 인접한 평형수탱크의 관장치로 유도할 수 있다.
    - (다) 평형수관이 화물유탱크를 관통하지 않고 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물유탱크에 인접하지 않는 선수부의 평형수탱크의 관장치를 화물유탱크에 인접하는 평형수탱크의 관장치에 유도할 수 있다. (빌지관에 대하여는 규칙 1003.의 1항 (3)호를 적용한다) 다만, 역으로 기관실에 설치된 화물유탱크에 인접하지 아니하는 평형수탱크용의 펌프에 화물유탱크에 인접하는 평형수탱크의 평형수관을 유도하여서는 안된다.

표 7.1.8 화물유탱크를 통과하는 측심관 또는 공기관

관의 호칭지름(mm)	관두께	참고 <sup>(1)</sup>
$A < 100$	8.7	Sch. 160
$100 \leq A < 200$	11.1	Sch. 120
$200 \leq A < 250$	12.7	Sch. 80
$250 \leq A$	15.1	Sch. 80
(비고) <sup>(1)</sup> KSD 3562 및 KSD 3570에 정하는 표준		

2. 불활성 가스 공급관 및 선수/선미 하역 설비를 위한 관장치를 제외하고, 모든 화물관장치(화물탱크 벤트관, 압력도출관, 화물탱크 퍼징 및 가스프리 관/덕트를 포함)는 규칙 8편 1장 103. 6항에서 정의된 화물지역 내에 배치되어야 한다. (2025)

- 2.항 : MSC.1/  
Circ.1683 내용  
일부를 반영신설

개 정 안	개 정 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제 7 편 전용선박</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장 유조선</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0 절 유조선의 관장치 및 벤트장치</b></p> <p>1002. 화물유펌프, 화물유관장치, 화물유탱크내 배관 등</p> <p>〈생략〉</p> <p>3. 규칙 1002.의 4항을 적용함에 있어 화물유관에 접속하는 관장치의 취급은 다음에 따른다. 【규칙 참조】</p> <p>(1)화물유관에 접속하는 다른 관계통의 펌프 및 관장치는 화물유관 계통으로서 취급한다. 다만, 규칙 1002.의 2항 (4)호, 9항 (6)호, 1003.의 1항 (2)호, 2항 (2)호, 8편 부록 8-5의 2항 (10) (사) 및 다음 (2)호에 규정하는 관 장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화물유관에 접속하는 관장치라는 것은 화물유관에 접속하고 개구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화물유 관장치 조작용의 유압관 등은 여기서 말하는 화물유관에 접속하는 관 장치로 보지 아니한다.</p> <p>(2)화물유관에 화물유관 이외의 관장치를 접속하는 경우</p> <p>(가) 탱크 통풍용관 : 탱크 통풍용관과 화물유관이 접속하는 경우에는 8편 부록 8-5의 2 (10) (사) 및 (아)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통풍기는 불활성가스 송풍기를 제외하고 <u>위험구역화물지역</u>에 설치한다. <u>통풍기가 배워된 안전구역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프리용 팬/블로워 및 관련 통풍용관/덕트는 적용지침 8편 2장 406. 3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화물지역 외부의 선수부 (forecastle area)에 위치할 수도 있다. (2025)</u></p> <p>a) <u>통풍기로부터 통풍관에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차단밸브 및 니사조임 체크밸브가 연속하여 설치되어야 한다.</u></p> <p>b) <u>상기 a)항의 밸브는 통풍용관이 안전구역을 지나가는 격벽에 위치하여야 하며 최소한 니사조임 체크밸브는 안전구역 외부에 위치하여야 한다.</u></p> <p>c) <u>차단밸브는 통풍기가 시동된 후에 열려야 하며, 통풍기가 정지한 후에는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 통풍기 및 밸브의 조작에 대한 절차가 조작 장소 근처에 게시되어야 한다.</u></p> <p>d) <u>통풍기의 흡입은 통풍기가 설치된 구역 외부의 안전한 장소(예, 개방 갑판)로부터 유도되어야 한다.</u></p> <p>e) <u>통풍기는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형식이어야 한다.</u></p> <p>〈생략〉</p>	<p>〈2026. 1. 1 시행 (선박 건조계약일, 회보발행)〉</p> <p>* MSC.1/Circ.16 83 반영</p> <p>- 8편 적용지침에 반영된 MSC.1/ Circ.1683을 적용하도록 개정 및 용어의 일치화</p>

# 선급 및 강선규칙 개정(안)

(외부의견조회)

## 7편



2025. 9.  
기관규칙개발팀

## - 주요 개정 내용 -

- (1) 2026.07.01.일자 시행사항 (건조계약일 기준)
  - 석탄운반선 전기설비요건 개정 (NAJ4800-10-2025)

개 정 안	개 정 사 유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장 산적화물선</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6 절 석탄운반선의 전기설비</b></p> <p><b>1601. 일반</b> 이 절의 규정은 석탄운반선의 화물창 및 이것과 통하는 구획 및 구역의 전기설비에 적용한다.</p> <p><b>1602. 위험구역</b> 다음의 구획 및 구역은 위험구역이므로 방폭형 이외의 전기기기는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1)폐워된 화물창 (2)화물창용 통풍덕트 <u>(3)화물창에 인접하고 그 격벽 또는 갑판에 기밀구조가 아닌 문, 창구 등의 개구가 있는 구획</u></p> <p><b>1603. 전기설비 [지침 참조]</b></p> <p><b>1. 화물창위험구역의 전기설비</b> <u>화물창1602.에 정의된 위험구역</u>에는 원칙적으로 전기기기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본질 안전회로인 경우를 제외하고 스위치, 리셉터클 등은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2) (1)호 이외의 전기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폭형인 것으로 하고 급전 케이블을 포함하여 외상을 받을 염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u>화물창위험구역</u> 밖으로 나오는 부분에는 전선관통 쇠파이 등으로 봉쇄하여야 한다. (3) <u>화물창위험구역</u>을 통과하는 케이블은 기밀로 된 두꺼운 강관내에 포설하고 <u>화물창위험구역</u> 밖으로 나오는 관의 양단부는 전선관통 쇠파이 등으로 봉쇄하여야 한다.</p> <p><b>2. 화물창에 인접한 구획의 전기설비</b> <del>화물창에 인접하고 그 격벽 또는 갑판에 기밀구조가 아닌 문, 창구 등의 개구가 있는 구획의 전기기기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방폭형인 것하여야 한다.</del></p> <p><b>32. 카고램프(cargo lamp)</b> 화물창내에 사용하는 카고램프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것하여야 한다.</p>	<p>&lt;2026. 7. 1 시행 (선박 건조계약 일)&gt; * NAJ4800-10-2 025 - 난징지부 개정 요청사항 반영 및 기존 요건 수정반영 - 내압방폭구조를 6편1장9절용어와 같이 용어통일 - [내부심의결과] 전체적인 문장의 구조, 용어의 통일 등의 수행이 필요함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개정</p>

#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개정(안)

(외부의견조회)

## 7편



2025. 9.  
기관규칙개발팀

## - 주요 개정 내용 -

- (1) 2026.07.01.일자 시행사항 (건조계약일 기준)
  - 석탄운반선 전기설비요건 개정 (NAJ4800-10-2025)

개 정 안	개 정 사 유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장 산적화물선</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6 절 석탄운반선의 전기설비</b></p> <p><b>1603. 전기설비 【규칙 참조】</b></p> <p>1. 규칙 1603.의 1항 (2)호의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폭형” <del>은로는이</del>란 일반적으로 규칙 6편 1장 9절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발화도 G4, 폭발등급 d1(또는 (KS C)IEC 60079에 규정된 가스증기그룹 II A, 온도등급 T4) 이상의 내압(耐壓) 방폭구조, 본질안전방폭구조 및 <u>내압방폭구조압력방폭구조</u>인 것으로 탄가루 가운데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u>이에 추가하여, 최소한 IP 55의 보호등급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비방폭형인 경우, 설치된 모든 전기 장비는 선적 전에 전원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야 하며, 임의로 재연결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전원의 차단은 위험구역 외부에 설치된 절연 회로(isolating link) 또는 잠금 가능한 스위치를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u></p> <p>2. <u>화물창위험구역</u>내에 설치한 전기기기에 이르는 케이블은 일반적으로 무기절연 동피복 케이블, 납피복 외장 케이블 또는 비금속 피복외장 케이블로 하여야 한다.</p> <p><del>3. 규칙 1603.의 2항의 화물창에 인접한 구획의 전기설비 규정중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방폭형이란 규칙 1602.1603.의 1항에 따른다.</del></p> <p><del>4.3. 규칙 1603.의 32항에서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것” 이란 일반적으로 규칙 6편 1장 9절 및 (KS C)IEC 60079 시리즈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del></p>	<p>〈2026. 7. 1 시행 (선박 건조계약 일)〉</p> <p>* NAJ4800-10-2 0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징지부 개정 요청사항 반영 및 기존 요건 수정반영</li> <li>- 내압방폭구조를 6편1장9절용어와 같이 용어 통일</li> <li>- [내부심의결과] 전체적인 문장의 구조, 용어의 통일 등의 수행이 필요함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개정</li> </ul>

# 선급 및 강선규칙 개정사항

7편



2025. 6.  
기관규칙개발팀

## - 주 요 개 정 내 용 -

(1) 시행일 : 2026.01.01.일자 건조계약일 기준 (회보발행)

◎ IACS UR F 44 Rev. 3 & Corr.1 반영 : 유탱커 및 케미컬 탱커의 Fore peak ballast tank 및 배치에 대한 요건 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현재</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 사유</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장 유조선</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0 절 유조선의 관장치 및 벤트장치</b></p> <p><b>1003. 화물유뿔프실 및 화물유탱크에 인접한 코퍼댐 및 탱크의 관장치</b></p> <p>〈생략〉</p> <p><b>3. 선수 평형수탱크</b></p> <p>—— 화물지역 내의 다른 평형수탱크에 사용하는 관장치에 의해 평형수가 주입되는 선수 평형수탱크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p> <p>(1) 벤트관의 개구단은 발화원으로부터 다음을 고려한 적절한 기리의 개방감판 상에 위치하여야 한다.</p> <p>(가) 선수 평형수탱크 벤트관의 개구단으로부터 1.5 m 이내에 있는 개방감판 상의 구역 또는 반폐위구역 : 위험구역 1(zone 1)</p> <p>(나) 상기 (가) 구역의 외측 1.5 m 이내의 개방감판 상의 구역 또는 반폐위구역 : 위험구역 2(zone 2)</p> <p>(2) 적절한 휴대식 계측장치로 선수 평형수탱크 내의 기연성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개방감판 상에 구비되어야 한다.</p> <p>(3) 선수 평형수탱크는 개방감판으로부터 직접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p> <p>(4) 선수 평형수탱크는 개방감판으로부터 직접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조건에 만족될 경우 개방감판으로부터 폐위구역을 통하여 선수 평형수탱크로 간접 접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p> <p>(가) 코퍼댐에 의하여 폐위구역이 화물유탱크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폐위구역 내에 위치하는 볼트로 체결되는 기밀의 맨홀을 통하여 맨홀에 다음 조치를 취한 후에만 선수 평형수탱크를 개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나타내는 경고판을 부착하여야 한다.</p> <p>(a) 가스프리(gas free)가 된 것을 입증; 또는</p> <p>(b) 폐위구역 내에 있는 안전이 증명되지 않은 전기 기기의 전원이 차단된 것을 확인.</p> <p>(나) 폐위구역이 화물유탱크와 공통경계로 되어서 위험구역일 경우, 그 폐위구역은 충분히 통풍될 수 있어야 한다.</p>	<p>〈2026. 1. 1 시행 (선박 건조계약일), 회보발행〉</p> <p>* IACS UR F44 Rev.3&amp;C orr.1</p> <p>- 전면개정</p>

개정안	개정 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장 유조선</b> <b>제 10 절 유조선의 관장치 및 벤트장치</b></p> <p>1003. 화물유펌프실 및 화물유탱크에 인접한 코퍼댐 및 탱크의 관장치</p> <p>〈생략〉</p> <p><b>3. 유탱커 및/또는 케미컬 탱크의 선수 평형수탱크 및 구역 배치 (2025)</b></p> <p>(1) 유탱커 및/또는 케미컬 탱크의 선수 평형수탱크 및 구역 배치</p> <p>(가) 화물지역 내의 다른 평형수탱크에 사용하는 관장치에 의해 평형수가 주입되는 선수 평형수탱크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p> <p>(a) 벤트관의 개구는 IEC 60092-502:1999에 따라, 발화원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의 개방갑판 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측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b) 선수 평형수탱크는 개방갑판으로부터 직접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대안으로, 개방갑판으로부터 선수 평형수탱크로의 간접 접근은 펌프실, 디프 코퍼댐(deep cofferdam), 파이프 터널, 화물창, 이중 선체구역, 선수 창고(bosun's store) 또는 유류나 위험화물을 적재하지 않는 유사한 구역에서 SOLAS II-1/3-6.3.1의 요건을 준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간접 접근로에 설치된 전기장비는 개방되는 위험구역에 적합한 승인된 안전형이거나 진입 전 전원이 차단되어야 한다.</p> <p>(c) 선수 평형수탱크로 접근하는 동안 연속통풍이 유지되어야 한다.</p> <p>(d) 선수 평형수탱크는 개방갑판으로부터 직접 측심할 수 있어야 한다.</p> <p>(e) 선수 평형수탱크는 개방갑판으로 직접 가스프리되거나 지정된 트렁크를 통하여 개방갑판으로 가스프리 되어야 한다. 맨홀 및 지정된 트렁크 입구의 개방 전, 트렁크 및 선수 평형수탱크가 가스프리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맨홀의 개방이나 지정된 트렁크의 입구를 열지 않고도 가스프리 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개방 갑판상의 맨홀 및 발화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가스프리 용도로 지정되어 사용되는 트렁크의 상단의 개방은 허용될 수 있다.</p> <p>(f) 선수 평형수탱크가 코퍼댐을 통하여 화물구역과 격리되어 있다면 위험구역 "2"(Zone 2)로 간주되어야 하며, 화물탱크와 인접해 있다면 위험구역 "1"(Zone 1)로 간주되어야 한다. 선수 스톨스터(bow thruster) 구역이 존재하는 탱크의 경우, 비위험구역으로 분류된 선수 스톨스터실을 통과하는 배관은 완전한 용접 이음이어야 하며, 선수 충돌격벽밸브는 선수 평형수탱크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p> <p>(g) 적절한 휴대식 계측장치를 통하여 선수 평형수탱크 내부의 독성 및 가연성가스(현재 항해중 운송되는 화물 및 마지막으로 선수 평형수탱크의 평형수배출이 수행된 이후를 기한)를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이 개방갑판에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선수 평형수탱크가 완전히 가스프리된 상태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측심관을 통하여, 휴대식 계측장치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목적의 추가의 수단은 요구되지 않는다.</p> <p>(2) 평형수 탱크로 정의되지 않은 선수 구역에 대한 추가 요건</p> <p>(가) 위험 구역 "1" 또는 위험구역 "2"로 정의된 모든 구역, 공소 및/또는 개방갑판 또는 화물 탱크와 인접한 중간 구역(intermediate space)으로부터의 간접접근로는 개구 및 접근에 대하여 선수 평형수탱크와 관련한 (1)호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p> <p>(나) 위험구역으로 정의되지 않은 구역 또는 공소가 다른 비위험구역(예 : 선수 창고)으로 출입이 가능하다면,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p> <p>(a) 위험구역(예 : 선수 평형수탱크)으로 출입이 가능한 비위험구역은 반드시 개방갑판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비위험구역(예 : 선수 창고)을 통하지 않고 개방갑판에서 직접 가스프리가 되어야 한다.</p> <p>(b) 위험구역(예 : 선수 평형수탱크)으로 출입이 가능한 비위험구역(예 : 공소)의 선수 창고에서의 출입은 볼트로 체결되는 가스밀의 맨홀을 통하여 허용될 수 있으며, 비위험구역으로 접근은 가스프리가 된 것을 확인되어야 접근이 가능함을 알리는 경고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역들의 분리는 IEC 60092-502:1999 4.1.4 및 4.1.5를 참조한다.</p> <p>(3) 이와 관련한 배치의 예는 적용지침 1003. 6을 참조한다. <b>【지침 참조】</b></p>	<p>〈2026. 1. 1 시행 (선박 건조계약일), 회보발행〉</p> <p>* IACS UR F44 Rev.3&amp;C orr.1</p> <p>- 전면개정</p> <p>- 기존규칙상 적용 조건 유지</p> <p>(*) 전문위원회 문구수정 - 3.(1).(가)(e) : "트렁크의"에서 "의" 삭제 - 3.(2).(나) : 띄워쓰기 수정</p>

#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개정사항

7편



2025. 6.  
기관규칙개발팀

## - 주요 개정 내용 -

(1) 시행일 : 2026.01.01.일자 건조계약일 기준 (회보발행)

◎ IACS UR F 44 Rev. 3 & Corr.1 반영 : 유탱커 및 케미컬 탱커의 Fore peak ballast tank 및 배치에 대한 요건 개정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제 1 장 유조선  
제 10 절 유조선의 관장치 및 벤트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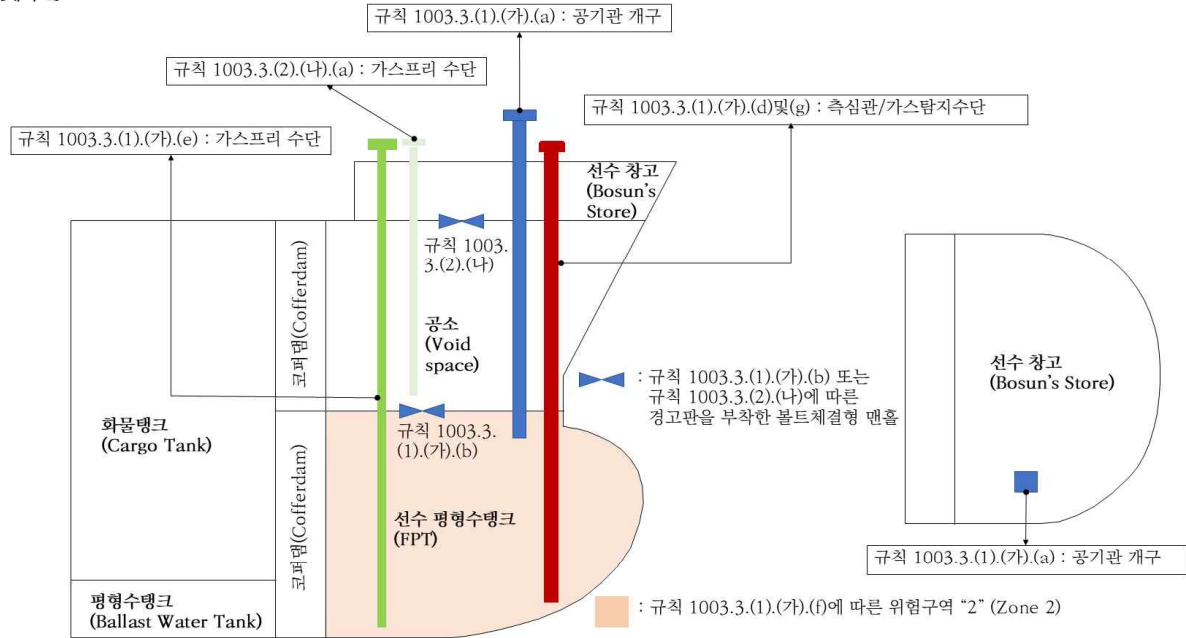
1003. 화물유펌프실, 코퍼댐 및 화물유탱크에 인접한 탱크의 관장치

<생략>

6. 규칙 1003.의 3항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가능한 배치의 예는 다음을 참조한다. (2025) 【규칙 참조】

(1) 유조선 및 케미컬 탱커에 적용가능한 배치의 예 (예시 1, 2, 5 및 6)

[예시 1]



<운전 요건>

1. 규칙 1003.3.(1).(가).(c)에 따라, 선수 평형수탱크로 접근하는 동안 연속통풍이 유지되어야 한다.
2. 규칙 1003.3.(1).(가).(g)에 따라, 선수 평형수탱크가 완전히 가스프리가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수 평형수탱크 내부의 독성 및 가연성가스(현재 항해중 운송되는 화물 및 마지막으로 선수 평형수탱크의 평형수 배출이 수행된 이후를 기반)가 탐지되어야 한다.
3. 탐지가 요구되는 화물에 대하여, 독성증기 탐지 설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선수 평형수탱크는 회석 방식을 이용하여 최소 24시간 동안 시간당 최소 6회의 환기를 수행할 수도 있다. 탱크 진입 절차는 IMO Res.A.1050(27) 및 IBC Code 13.2.3에 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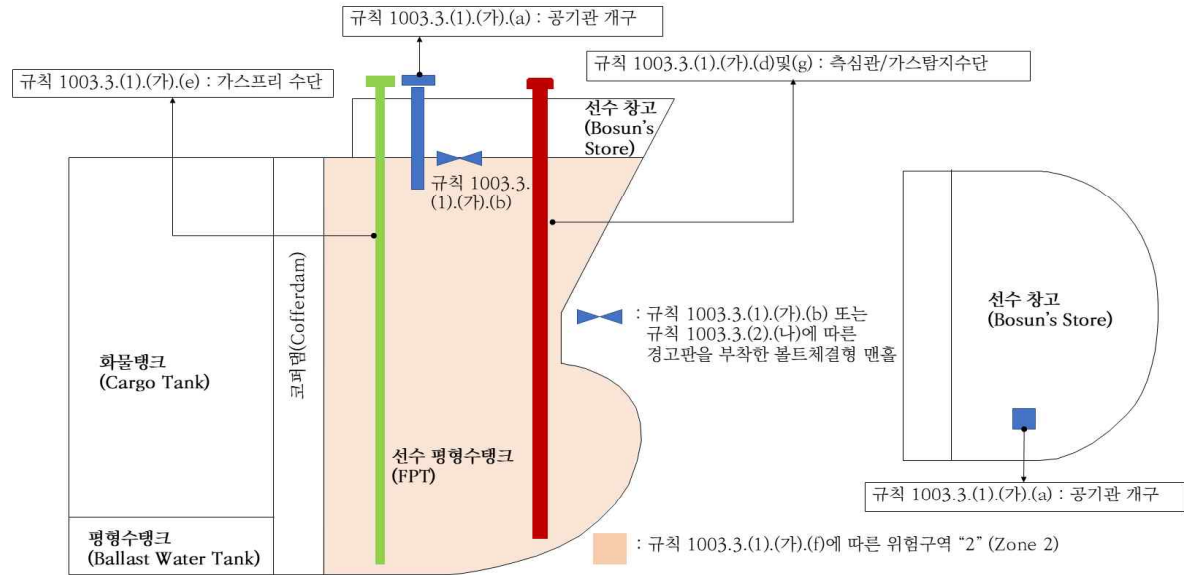
그림 7.1.32.1 유조선 및 케미컬 탱커에 적용가능한 배치의 예

<2026. 1. 1 시행 (선박 건조계약일), 회보발행>  
\* IACS UR F44 Rev.3&C orr.1  
- IACS UR F44의 배치의 예시 그림을 반영

## 개정안

## 개정 사유

[예시 2]



**<운전 요건>**

1. 규칙 1003.3.(1).(가).(c)에 따라, 선수 평형수탱크로 접근하는 동안 연속통풍이 유지되어야 한다.
2. 규칙 1003.3.(1).(가).(g)에 따라, 선수 평형수탱크가 완전히 가스프리가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수 평형수탱크 내부의 독성 및 가연성가스(현재 항해중 운송되는 화물 및 마지막으로 선수 평형수탱크의 평형수 배출이 수행된 이후를 기반)가 탐지되어야 한다.
3. 탐지가 요구되는 화물에 대하여, 독성증기 탐지 설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선수 평형수탱크는 회석 방식을 이용하여 최소 24시간 동안 시간당 최소 6회의 환기를 수행할 수도 있다. 탱크 진입 절차는 IMO Res.A.1050(27) 및 IBC Code 13.2.3에 따라야 한다.

**그림 7.1.32.2 유조선 및 케미컬 탱커에 적용가능한 배치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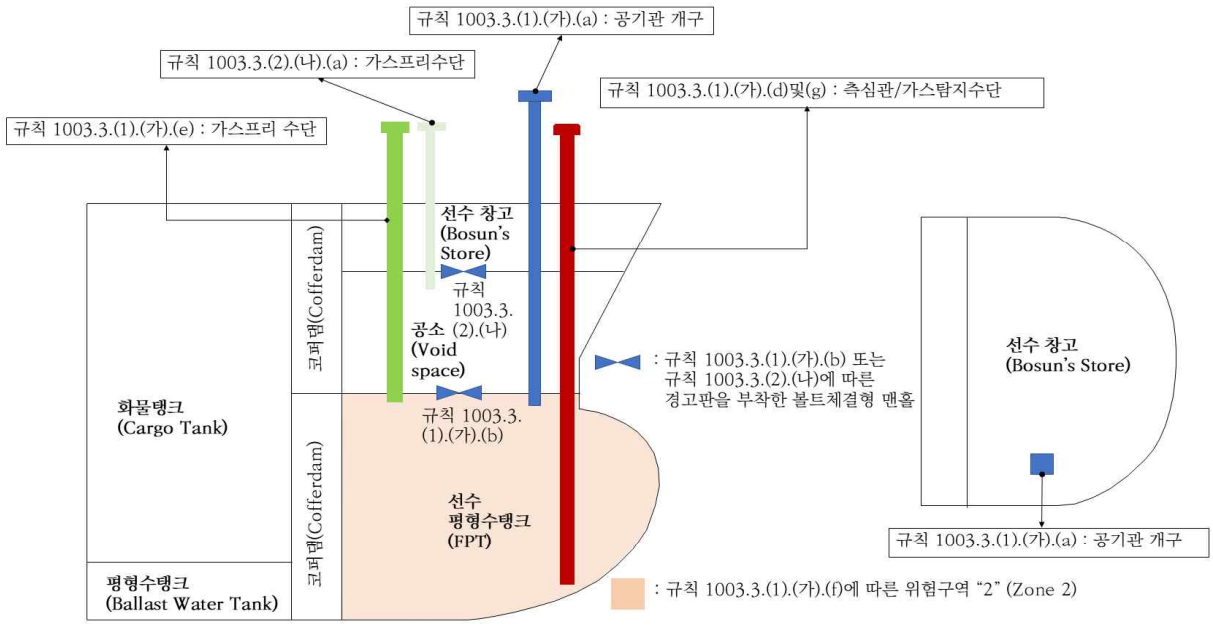
<2026. 1. 1 시행 (선박 건조계약일), 회보발행>  
 \* IACS UR F44 Rev.3&C orr.1

- IACS UR F44의 배치의 예시 그림을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예시 51



<운전 요건>

1. 규칙 1003.3.(1).(가).(c)에 따라, 선수 평형수탱크로 접근하는 동안 연속통풍이 유지되어야 한다.
2. 규칙 1003.3.(1).(가).(g)에 따라, 선수 평형수탱크가 완전히 가스프리가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수 평형수탱크 내부의 독성 및 가연성가스(현재 항해중 운송되는 화물 및 마지막으로 선수 평형수탱크의 평형수 배출이 수행된 이후를 기반)가 탐지되어야 한다.
3. 탐지가 요구되는 화물에 대하여, 독성증기 탐지 설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선수 평형수탱크는 회석 방식을 이용하여 최소 24시간 동안 시간당 최소 6회의 환기를 수행할 수도 있다. 탱크 진입 절차는 IMO Res.A.1050(27) 및 IBC Code 13.2.3에 따라야 한다.

그림 7.1.32.5 유조선 및 케미컬 탱크에 적용가능한 배치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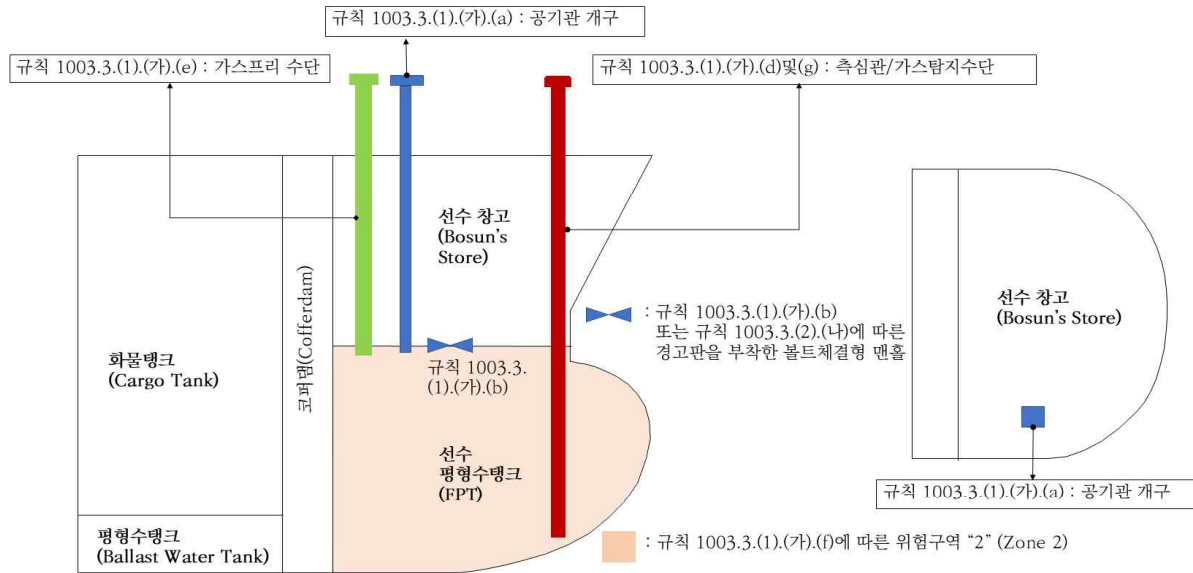
<2026. 1. 1 시행 (선박 건조계약일), 회보발행>  
\* IACS UR F44 Rev.3&C orr.1

- IACS UR F44의 배치의 예시 그림을 반영

## 개정안

## 개정 사유

예시 6



**<운전 요건>**

1. 규칙 1003.3.(1).(가).(c)에 따라, 선수 평형수탱크로 접근하는 동안 연속통풍이 유지되어야 한다.
2. 규칙 1003.3.(1).(가).(g)에 따라, 선수 평형수탱크가 완전히 가스프리가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수 평형수탱크 내부의 독성 및 가연성가스(현재 항해중 운송되는 화물 및 마지막으로 선수 평형수탱크의 평형수 배출이 수행된 이후를 기반)가 탐지되어야 한다.
3. 탐지가 요구되는 화물에 대하여, 독성증기 탐지 설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선수 평형수탱크는 회석 방식을 이용하여 최소 24시간 동안 시간당 최소 6회의 환기를 수행할 수도 있다. 탱크 진입 절차는 IMO Res.A.1050(27) 및 IBC Code 13.2.3에 따라야 한다.

**그림 7.1.32.6 유조선 및 케미컬 탱커에 적용가능한 배치의 예**

<2026. 1. 1 시행 (선박 건조계약일), 회보발행>  
\* IACS UR F44 Rev.3&C orr.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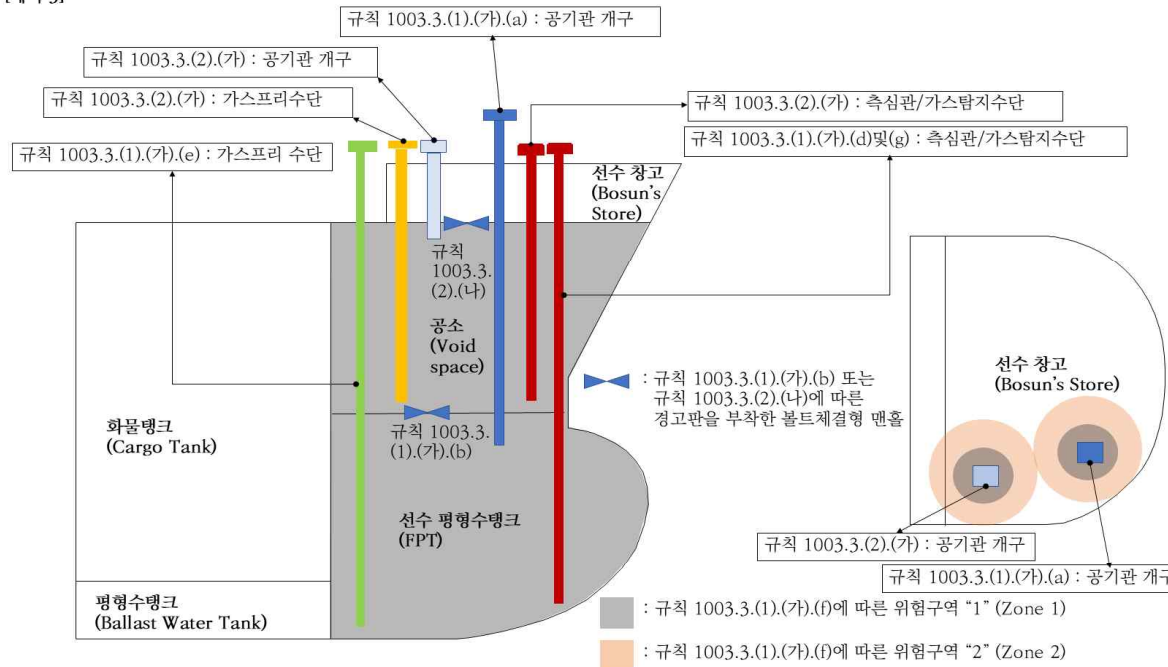
- IACS UR F44의 배치의 예시 그림을 반영

## 개정안

## 개정 사유

### (2) 유조선에만 적용가능한 배치의 예 (예시 3 및 4)

예시 3



**<운전 요건>**

1. 규칙 1003.3.(1).(가).(c)에 따라, 선수 평형수탱크로 접근하는 동안 연속통풍이 유지되어야 한다.
2. 규칙 1003.3.(1).(가).(g)에 따라, 선수 평형수탱크가 완전히 가스프리가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수 평형수탱크 내부의 독성 및 가연성가스(현재 항해중 운송되는 화물 및 마지막으로 선수 평형수탱크의 평형수 배출이 수행된 이후를 기반)가 탐지되어야 한다.
3. 탐지가 요구되는 화물에 대하여, 독성증기 탐지 설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선수 평형수탱크는 회석 방식을 이용하여 최소 24시간 동안 시간당 최소 6회의 환기를 수행할 수도 있다. 탱크 진입 절차는 IMO Res.A.1050(27) 및 IBC Code 13.2.3에 따라야 한다.

그림 7.1.32.3 유조선에만 적용가능한 배치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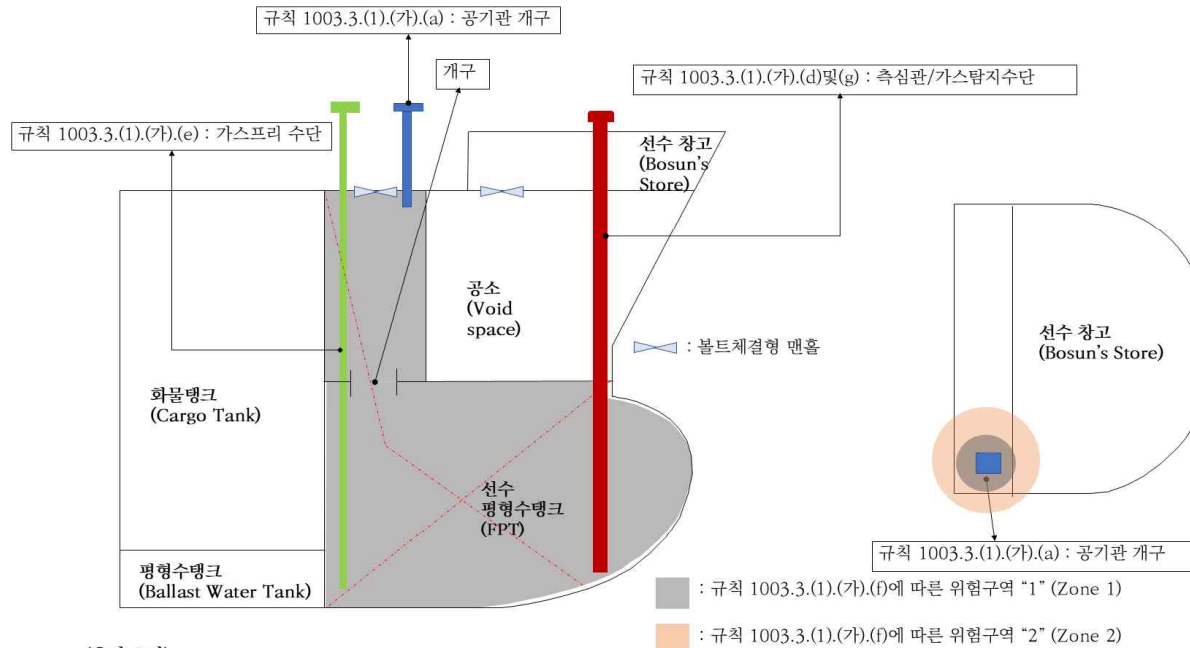
<2026. 1. 1 시행 (선박 건조계약일), 회보발행>  
 \* IACS UR F44 Rev.3&C orr.1

- IACS UR F44의 배치의 예시 그림을 반영

### 개정안

### 개정 사유

[예시 4]



**<운전 요건>**

1. 규칙 1003.3.(1).(가).(c)에 따라, 선수 평형수탱크로 접근하는 동안 연속통풍이 유지되어야 한다.
2. 규칙 1003.3.(1).(가).(g)에 따라, 선수 평형수탱크가 완전히 가스프리가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수 평형수탱크 내부의 독성 및 가연성가스(현재 항해중 운송되는 화물 및 마지막으로 선수 평형수탱크의 평형수 배출이 수행된 이후를 기반)가 탐지되어야 한다.
3. 탐지가 요구되는 화물에 대하여, 독성증기 탐지 설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선수 평형수탱크는 회석 방식을 이용하여 최소 24시간 동안 시간당 최소 6회의 환기를 수행할 수도 있다. 탱크 진입 절차는 IMO Res.A.1050(27) 및 IBC Code 13.2.3에 따라야 한다.

**그림 7.1.32.4 유조선에만 적용가능한 배치의 예**

<2026. 1. 1 시행 (선박 건조계약일), 회보발행>  
\* IACS UR F44 Rev.3&C orr.1

- IACS UR F44의 배치의 예시 그림을 반영